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 박대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6482호·제26483호)

2024.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V . 입법의 재정영향	17
V . 기타 참고사항 -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 경과	1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2. 2.

다. 회 부 일 : 2024.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현 행	개정안
☐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예정 *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등	☐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 유지

☐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방식을 유지하려는 것임.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제는 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그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며, 2단계 누진세율(3억원까지는 20%, 3억원 이상은 25%)로 분류과세하고,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며, ②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구분을 재분류(이자·배당·금융투자 등 원천에 따른 분배금, 환매·양도소득 등)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상응하여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를 개편하

는 내용임.

- 개정안은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을 입법안에 반영한 것임.

정부는 금융 과세는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의 국가 간·자산 간 이동성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상생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이 폐지하고자 하는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조	주요 내용
제4조	○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금융투자소득 신설
제16조 ~ 제17조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변경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과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배당소득세→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체계를 변경함
제87조의2	○ (제1절) 정의 '주식등', '채권등', '양도'에 대한 정의 신설
제87조의3	○ (제2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공익신탁의 이익,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과세함
제87조의4 ~ 제87조의5	○ (제3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기본공제 순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 산출세액, 결정세액, 총결정세액의 계산방식을 규정함.
제87조의6 ~ 제87조의18	○ (제4절)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주식등·채권등·투자계약증권의 양도소득,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을 포함시키고, 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함

제87조의19 ~ 제87조의20	○ (제5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을 2단계 누진구조(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감면액 계산방식을 규정함.
제87조의21 ~ 제87조의22	○ (제6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 중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았으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예정신고 대상으로 하고, 예정신고 납부 시기·절차 등을 규정함.
제87조의23 ~ 제87조의24	○ (제7절)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의무 면제사유를 규정하고, 확정신고 납부 시기·절차 등을 규정함
제87조의25 ~ 제87조의27	○ (제8절)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확정신고의 미신고·탈루·오류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납하거나 초과납부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환급할 수 있도록 함
제88조,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2조~ 제105조, 제114조	○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주식등의 양도소득 및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율·기준시가 산정·구분계산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제119조	○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관련 국내원천소득 과세방식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 관련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현행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
제127조~ 제129조, 제148조의2, 제148조의3, 제155조의2, 제164조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반기마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을 규정함.
제174조의2	○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 보관 및 제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보유내역 등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금융회사등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에게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방식은 현행대로 환원되며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 ①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 일부 주식(대주주¹⁾, 장외시장 거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 ② 집합투자기구(펀드) 환매·양도소득이나 파생결합증권 이익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 ③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에 대하여는 모든 상품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서 일부 상품의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 ④ 채권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전면 비과세되며,
- ⑤ 파생결합사채 이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게 됨.

즉 2025년부터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대주주 등 제외), 채권, 주식형 ETF 등의 양도소득]이 존재하거나, 배당소득세(집합투자기구이익, 파생결합증권이익) 또는 양도소득세(대주주 양도주식, 파생상품소득)가 혼재하여 과세되는 체계로 변경되는 것임.

1)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안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별 과세방식 주요 변경사항]

연번	과세대상	내용
1	주식 양도소득	모든 주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일부 주식 양도소득(대주주·비상장·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2	집합투자기구(펀드) 환매·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3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	모든 파생상품 거래·행위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일부 파생상품 거래·행위 소득 양도소득세 과세
4	채권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세 → 비과세
5	파생결합증권 이익	금융투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6	파생결합사채 이익	이자소득세 → 배당소득세

참고로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대로 세율 인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증권거래세율(「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코스피 ²⁾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2) 코스피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0.15% 부과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과세체계 비교]

[현 행]	[2025년 이후]
이자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국내·국외 예금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보험차익 · 파생결합 예금 이익 (주가연계예금, 엔화스왑예금)	이자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좌 동)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배당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의제, 인정, 간주) · 집합투자기구 이익(이자·배당 분배) · 집합투자기구 이익(채권양도)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등) · 파생결합사채 이익(ELB, DLB) · 출자공동사업자의 이익	배당소득(14%, 금융소득종합과세)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배당소득 → 금융투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 (좌 동)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대주주 상장주식 등)(10~30%) · 파생결합증권 이익(주가지수ELW)(10%) · 파생상품 소득(주가지수선물·옵션 등)(10%)	금융투자소득(20%, 25%) · 주식 양도소득(전면과세) · 채권 양도소득 · 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환매·양도) · 파생결합증권 이익(ELS, ETN, ELW) · 파생상품 소득 · 양도소득 → 금융투자소득 ·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소득 · 상장주식 양도소득(소액주주) · 채권 양도소득 · 집합투자기구 이익(상장주식 양도) · 주식형 ETF 양도소득 · 파생결합증권(ELS, DLS) 양도소득 · 개별주가종목·금리·통화 파생 등	

□ 한편,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상품 과세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³⁾.

첫째, 미국은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 자산(capital assets) 손익 전반을 총소득에 포함시켜 7단계로 누진과세(10~37%)하되 1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본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단계 분리과세(0%, 15%, 20%)하고, 장단기 양도손익간의 통산을 허용하고 있음.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분배금은 그 원천 및 종류에 따라 구분과세하고 지분양도 자본손익에 대하여는 자본자산 손익과 동일하게 취급함.

둘째, 일본은 장기간에 걸쳐 금융소득과세의 일체화를 추진하면서 양도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단순화 및 통합화 작업을 거쳤음.

일본은 금융투자상품을 ① 상장주식·채권·펀드, ② 비상장주식, ③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 내에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음. ① 상장주식·채권·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② 비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③ 파생상품·파생결합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잡소득으로 구분하되, 이자소득세율·배당소득세율·양도소득세율을 모두 20.315%로 일원화하여 조세중립성을 높였음.

3)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 2020.6. 참조.

펀드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펀드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자소득세(공사채 투자신탁)와 배당소득세(주식투자신탁)를 과세하고, 펀드의 환매나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펀드 유형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과세함.

영국의 경우 자본이득(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하여 자본이득세로 분류과세하고 있으며, 모든 자본소득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종합소득과 자본이득의 합계액 규모에 따라 10% 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

독일의 경우 자본소득(이자·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과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5%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자본소득 내에서 손익통산이 가능하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손익 간 상계만 가능함.

참고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호주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경우 비과세되고 있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해외 과세현황]

구 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개괄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 자본자산	상장주식·채권·펀드,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양도가능자산	주식, 채권 및 증서로부터의 양도소득	주식과 금융상품으로 부터의 양도소득*	주식,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자산의 양도소득
주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채권	과세	과세	비과세 (적격회사채, 영국정부채 등)	과세	과세	과세
파생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펀드	분배금:소득원천별 과세 매매이익:자본이득 과세	분배금:이자·배당소득 과세 매매·환매이익: 양도소득 과세	분배금:이자·배당소득 과세 매매·환매이익: 자본이득 과세	직접투자자와 동일 과세	공모펀드: 자본투자소득 과세 특수투자펀드: 소득원천별 과세	종합소득 합산과세

[주요국의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체계 비교]

구 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과세체계	단기보유 종합과세 장기보유 분리과세 가능	분류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과세대상	모든 자본자산 (주택등 개인용도자산, 주식 등 투자자산)의 양도소득	주거용 부동산과 주식 등 그 외 자산으로 구분	상장주식 및 일반주식으로 구분	주식, 채권, 증권 양도차익, 파생거래, 공매도 이익 등
기본공제	장기자본이득에 대해 47,025~94,050달러	연간 면제금액 6,000파운드 적용	없음	저축자 일괄공제 (1인당 801, 부부합산 1,602유로)
손익통산	모든 자산 적용, 순손실 이월공제	모든 자본소득 간, 순손실 이월공제	상장·일반주식 각각 적용(배당소득 등 포함), 이월공제	주식은 주식양도손익 내 적용, 순손실 이월공제
세율	단기보유(종합, 10~37%) 장기보유(분리, 15~20%)	종합소득·자본이득 합계액 기준 10% 또는 20%	소득세 15% 주민세 5%, 부흥특별소득세 0.315%	분리과세 25% 연대세 5.5%, 교회세 8~9%
거래세	연방 거래세 없음 (뉴욕주는 과세)	인지세(0.5%) 과세	없음	없음

* 자료: 예산정책처 제공

[각국의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비교]

국가	증권거래세	주식양도소득세
한국	과세(0.18%)	과세(대주주)
미국	비과세	과세
영국	과세(인지세)	과세
프랑스	과세(0.3%)	과세
이탈리아	과세(0.2%)	과세
독일	비과세	과세
일본	비과세	과세
중국	과세(0.1%)	비과세
대만	과세(0.15%)	비과세
홍콩	과세(0.1%)	비과세
싱가포르	과세(0.2%)	비과세
호주	과세(인지세)	과세
뉴질랜드	비과세	비과세

*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사례」

□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찬반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고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과세대상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해외증시로의 투자자 이탈, 증시 침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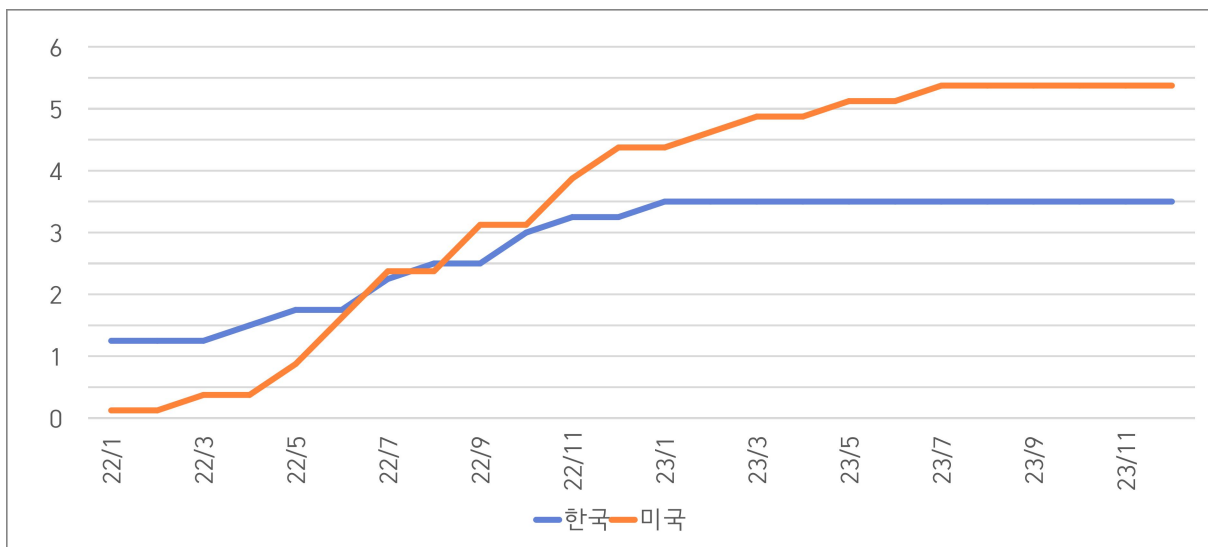
2020년 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11개 주요 증권사의 인별 거래내역을 기초로 분석·추정한 내역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과세대상자는 10배(1.5만명 → 15만명), 과세규모는 연간 약 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개인투자자 규모가 약 1,44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⁵⁾ 과세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를 약간 초과하는 규모긴 하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로 인해 이들이 해외증시 등으로 이탈하여 증시가 침체될 경우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임.

둘째,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주요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특히 한미간 금리역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고, 해외주식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함.

[한-미 금리 변화 추이]



* 자료: 한국은행

4) 다만, 예산정책처는 9개 증권사의 국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거래결과를 자료를 활용하여 세규모가 연간 약 1조 1,8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음.

5) 한국예탁결제원, '2022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미국주식투자 매수건수 및 매수금액]

년도	매수건수(건)	매수금액(100만 USD)
2014	50,186	2,574
2015	100,803	3,793
2016	148,544	3,695
2017	257,377	7,096
2018	400,830	11,751
2019	815,699	16,636
2020	2,620,790	97,958
2021	4,716,020	195,419
2022	4,787,540	147,830
2023	5,691,489	135,190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SEIBro

또한 한국증시는 외국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다는,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회하여 한국증시의 매력도를 상대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임⁶⁾.

위와 같은 두 주장은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는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를 감소시켜 자본의 해외유출, 투자심리 악화를 가져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임.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게 됨.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2021년 기준)]

구분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금융자산(%)	35.6	71.5	63.0	53.8	38.8

* 자료: 금융투자협회

6) 2024.2.9. 기준 나스닥 PER 27.13 PBR 3.03, S&P500 PER 27.28 PBR 4.67 코스피 PER 19.24 PBR 0.95

□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주장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는 것임. 현행 과세체계는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이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임.

또한,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와 같이 이를 도입하는 것이 글로벌 과세체계에 부합한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둘째, 금융투자소득세는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것임.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순소득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손실액에 대하여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소액 주식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철회는 수직적 형평성을 더욱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임.

셋째,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공백 문제, 투자유형별·금융상품별 과세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투자 의사결정 왜곡 문제 등 금융투자소득세를 통해 보완하려던 현행 금융세제 상의 여러 문제⁷⁾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것임.

7) 구체적으로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이 제외되어 집합투자 기구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거나,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입과 다른 금융상품 수익과의 손익통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넷째,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한국증시의 저평가 문제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회계의 불투명성·낮은 주주환원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필요가 있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와는 별개로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제도의 완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임.

우리나라 상장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차익 과세체계 차이⁸⁾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투자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일시적으로는 증시에 긍정적일지 모르나, 한국증시의 투자 매력도 확대를 위한 본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것임⁹⁾.

다섯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과 함께 수년간의 심의를 거쳐 합의한 내용인바, 이를 전면 철회할 경우 향후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책당국의 의지 및 정책일관성에 대한 시장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8) 우리나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데 반해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9) 최근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보다 정부가 이달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시가총액·업종별 비교공시, 기업가치 개선계획 공표 권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구성 지수 개발 및 ETF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찬·반 논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 또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대로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이 철회되고 이와 연계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방침은 유지될 경우 조세기반이 과도하게 잠식될 우려가 있고, 이는 증가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의 확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철회한다면 증권거래세 또한 과거로 환원하여 과세기반의 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¹⁰⁾.

또한, 만약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으로 인한 증권시장의 충격이 우려된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을 낮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거나 기본공제액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제도의 대원칙을 단계적으로 구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당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연간 약 1조 6천억원의 세수 증가를(2022년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당시 정부 및 예산정책처의 추계치), 증권거래세를 인하는 연간 약 2조 5천억원(2025년 기준)의 세수 감소(예산정책처,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었음.

IV. 입법의 재정영향

□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으로 인해 소득세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 필요한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을 예측할 수 있는 최신 자료 등이 부재해 추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2022년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를 2025년 8,066억원, 2026년 1조 6,131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V. 기타 참고사항 -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 경과

1. 도입 배경(2020년 말)

- 2020년 정기회에서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함으로써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의 축소 및 금융세제 정비를 통해 조세의 합리성, 투자중립성 및 형평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는 2019년 정기회에서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4116호)을 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에 따라, 정부가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8월 국회에 제출한('2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임.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의견(2019.11.)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방안과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를 포함한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정기국회 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

- 당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전의 「소득세법」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각 상품 유형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고, 주식등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① 예적금 이자 등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②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 양도차익 및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③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④ 국내주식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되며, 일부 대주주·상장주식장외거래·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⑤ 일부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

다만, ①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주식 거래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②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중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③ 채권 양도소득이나 파생결합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음.

□ 이러한 과세체계 하에서는 ① 일부 금융투자소득이 비과세되고, ②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에 따라 과세여부, 소득구분, 과세표준 계산방식, 세율 등을 달리 정하고 있어,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간 과세여부 등이 달라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개인의 투자의사결정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¹¹⁾하며, ③ 금융투자상품

11) 예를 들어 현행 「소득세법」 체제 하에서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비과세), 개인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간 손익통산 및 이월결손을 허용하지 않아 다른 금융상품의 손실 여부 또는 전년 금융투자 손실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면 납세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였음.

2. 제도 완비를 위한 정비(2021년 말)

-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정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입법과정에서 일부 검토가 미흡하였던 점 등을 보완하고자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함.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투자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을 세무서장의 요청 없이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고 5년간 이를 보유하도록 하며, 금융회사등이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특정금전신탁이 아닌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관리·징수하도록 하는 것 등임.

다. 제도 유예 및 추가 정비(2022년 말)

□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당시 ①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의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하락,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②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주요통로인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¹²⁾가 있고, ③ 개인투자자 보호장치¹³⁾의 정비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법안 제출의 이유로 제시하였음.

정부는 이와 함께 적격집합투자기구(펀드)의 분배금을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보아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의 과세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¹⁴⁾, 구분되어 운

12) 이론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자본화 효과”와 “동결효과”를 유발하여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낮추는 자본화효과는 자본이득세율의 변화 이전에, 가격을 높이는 동결효과는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주식과세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갑래, 김준석,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2014)

* 자본화효과(Capitalization Effects): 주식 매수자는 미래의 자본이득에 대해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므로, 자본이득세율의 인상은 수요곡선을 하향 이동시켜 주가하락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함.

* 동결효과(Locked-in effects): 주식매도자는 자본이득에 부과될 세금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므로, 자본이득세율 인상은 공급곡선을 상향이동시켜 주가상승과 거래량 감소를 유발함.

* 자본화 효과는 미래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에 의해 발생하고 동결효과는 자본이득의 실현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두 효과의 작용시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음.

13) 공매도 제도 개선, 물적분할 관련 주주보호, 상장폐지 요건 정비,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공정성 개선

14)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당시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 투자자가 받는 소득을 그 성격 및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인한 소득” 및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분배(투자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분배금)”받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소득으로, “집합투자기구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분배(투자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분배금)”받은 경우에는 투자자의 배당소득으로 보았음. 그러나 국내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등 납세를 위해 기준가, 배당기준가, 금융투자소득세기준가를 구분하여 매일 관리해야 하는 등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과세 구현이 곤란하여 금융회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자도 과세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세로 일원화함.

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일원화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사항을 함께 제출하였음.

- ☐ 이에 대하여 당시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만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임.

문 의 처
02)6788-5154